2012년 제4회 국제법 모의재판경연대회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조약의 해석과 적용 사건

(Utopia v. Ariana)

1. Ariana 국과 Utopia 국은 모두 국제연합(UN)과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국이며,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당사국이다. 양국은 모두 국제사법재판소규정상의 선택조항을 아무런 조건 없이 수락하였다.

2. 양국은 우호적인 관계 속에 상호간에 무역을 증대하여 오고 있었다. 그러나 2001년 Utopia 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Ariana 국은 자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Utopia 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중단하였다.

3. 그러나 광우병에 대한 우려가 가라앉기 시작하자, Utopia 국은 Ariana 국에게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며, 2008년 4월 양국은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한 협상을 개시하여 쇠고기 수입 자유화에 합의하고, 수입재개 합의문을 작성하고 수입위생조건을 규정하였다..

4. Ariana 국은 양국 간에 체결한 수입재개 합의문이 양해각서(MOU)로서, 국내법적 관행상으로는 고시류조약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단지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설명하였다.

5. 양국 간에 합의한 합의문 내에 수입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제5항에는 향

후 광우병 재발사태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In the event of (an) additional case(s) of BSE occur(s) in the Utopia, the Utopian government shall immediately conduct a thorough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and inform the Ariana government of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The Utopian government will consult with the Ariana government about the findings of the investigation. The Ariana government will suspend the importation of beef and beef products if the additional case(s) results in the OIE recognizing an adverse change in the classification of the Utopian BSE status."

6. 이와 관련하여 Ariana 국에서는 WTO 협정상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을 위한 검역주권을 Ariana 정부가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입재개 합의문 거부운동과 더불어 촛불시위가 진행되었다.

7. 강력한 국민들의 항의에 직면하자, Ariana 국 외교통상부는 성명을 발표하여, Ariana 국 정부는 양국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자조약상의 권리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0조상의 일반예외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WTO 「위생 및 검역조치에 관한 협정」(SPS) 에 따른 권리행사도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정부는 광우병이 추가 확인될 경우 일단 Utopia 산 쇠고기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8.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불만이 가라앉지 않자, 양국 간에 추가 협상을 진행하여 수입위생조건을 일부 강화하는 선에서 재합의가 이루어졌고, Utopia 국으로부터의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었다.

9. 한편 Ariana 의회는 보다 강화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자국의 국내법인 가축전염예방법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게 되었다.

"제32조 (수입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하지 못한다. 다만, 시험 연구 또는 예방약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물건과 항공기·선박의 단순기항 또는 밀봉된 컨테이너로 차량·열차에 싣고 제1호의 수입금지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
2.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3.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4. 특정위험물질 [이하생략]

제32조의2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수출국에 대한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생조건이 이미 고시되어 있는 수출국에서 소해면상뇌증이 추가로 발생하여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에 대한 일시적 수입 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이하생략]"

10. 그 후 양국 간에 순조롭게 쇠고기 교역이 진행되어 오던 중 Utopia 국의 일부지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국민들 사이에서 수입중단 요구가 들끓기 시작하였다. 이에 Ariana 국은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장시간의 숙고 끝에 선거를 앞두고 있는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Utopia 국 쇠고기의 수입중단을 결정하였다. 단, 이 기간 동안 국제수역사무국(OIE)는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았다.

11. Ariana 국의 수입업자는 정부의 수입중단조치로 자신이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서, 정부의 수입중단조치가 Ariana-Utopia 국간의 합의문에 어긋나므로 수입중단조치의 철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

였다. 이에 대하여 Ariana 국의 법원은 Ariana 국 정부가 실정법인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라 수입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양국 간의 합의도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고시류조약에 불가하므로 법률보다 우위에 있지 않을뿐더러, 후법 우선의 원칙에 따르더라도 국내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12. Utopia 국은 Ariana 국의 수입중단조치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하였으나, Ariana 국은 국내법상의 규정과 GATT, WTO SPS 협정 등을 언급하면서 수입중단조치를 유지하였다.

13.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Utopia 국은 외교적 해결방법으로는 그 해결이 어렵다고 보아 통상담당 간부회의를 소집하여 강제적 분쟁해결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14. 동 간부회의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한 결과, Utopia 국으로서는 Ariana-Utopia 국간에 체결된 수입재개 합의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WTO 분쟁해결기구에 사건을 부탁할 것을 검토하였으나, WTO 분쟁해결양해(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협정 조항에 따라 WTO 분쟁해결기구(DSB)가 양국간 MOU 적용을 거부할 것에 대비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이 사건을 부탁하기로 결정하였다.

15. 협상을 통한 이 사건의 해결이 어렵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한 Utopia 국은 2012년 5월 25일 Ariana 국을 ICJ에 일방적으로 제소하였다. Utopia 국은 ICJ에 대한 제소신청서에서 재판소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려 줄 것을 청구하였다.

(i) Ariana 국이 양국 간의 체결된 수입재개 합의문에 위반되는 입법행위를 하고, 이에 따라 수입중단조치를 내린 것, 국내법 규정에 따라 수입중단조치의 합법성을 인정한 것은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및 Ariana-Utopia 국간 쇠고기 수입재개 합의문(MOU) 위반임.

(ii) 양국 간 MOU를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0조 규정에 따른 후조약으로 판단하여 적용하거나, 비엔나협약 제41조 상의 "일부 당사국에만 다자조약을 변경하는 합의"로 보아 WTO 규정들보다는 양국 간 MOU를 적용하여 줄 것.

(iii) 나아가 WTO 규정을 해석하여 적용하게 되더라도 양국 간 MOU를 비엔나협약 제31조 3항(c)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사국 간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의 관계규칙"으로 보아 WTO 규정 해석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함.

(iv) Utopia 국은 Ariana 국 정부의 수입중단조치, 국제조약에 위반되는 입법행위, 국제조약에 위반되는 사법부의 판결 등의 조치가 국제법 위반행위를 구성하여 국가책임을 야기하므로 이들 행위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ICJ 판결시까지 Utopia 국이 입은 피해액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내려줄 것.

16. Utopia 국의 재판신청을 받은 ICJ는 이 제소사실을 ICJ 규정 제40조에 따라 즉각 Ariana 국에 통보하였으며, 아울러 ICJ에 출석할 자격을 가진 모든 국가에게도 통고하였다.

17. 사건의 통보를 받은 Ariana 국은 쇠고기 수입중단조치는 WTO협정에서 규정하는 무역관련 조치로서 국제사법재판소는 그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WTO 분쟁해결양해(DSU) 제23조에 따라 이 문제는 WTO의 전속관할권에 속하는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18. Utopia 국은 이에 대하여 본 사건은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6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법상의 문제 및 조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 국제사법재판소도 관할권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19. ICJ는 사안의 성격상 가급적 신속한 재판진행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ICJ는 양 당사국의 동의를 얻어 Ariana 국이 이 사건에 대한 ICJ의 관할권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것에 대해서도 별도의 선결적 항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첫 번째 항변서에서 그 내용을 함께 진술하여 본안 사건과 동시에 심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20. ICJ는 제소국인 Utopia 국에게는 2012년 7월 31일까지, 피소국인 Ariana 국에게는 2012년 8월 24일까지 각각 준비서면(memorial)과 항변서(reply)를 제출하라고 요청하였다. 최종적인 구두변론은 2012년 9월 15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